

임예진 관세법(2024년 대비) 개정사항

- 관세법 2023. 12. 31. 개정 [시행 2024. 1. 1.]
- 관세법 시행령 2023. 12. 12. 개정 [시행 2023. 12. 12.]
- 관세법 시행규칙 2023. 12. 20. 개정 [시행 2024. 1. 1.]

* 공지사항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3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 중에서
2024년 7월 1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규정 모두
본 개정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p.10 : 법 제2조 제20호 신설

㉔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p.23 : 법 제12조 전체 수정

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1항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항 작성 및 보존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 전자화문서 효력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40 : 법 제21조 제3항 신설 /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변경

제3항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① ㉠부터 ㉢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p.100 : 법 제37조의4 제1항 수정

제1항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103 : 법 제38조 제2항 수정

제2항 세액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p.123 : 법 제42조의2 ㉞, ㉟, ㊱ 수정 및 ㊲ 신설

- ㉞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㉟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의 금액의 100분의 30
- ㊱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의 금액의 100분의 20
- ㊲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 ㉠의 금액의 100분의 10

p.159 : 법 제53조 제3항 수정

제3항 정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p.165 : 법 제56조 제1항 수정

제1항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②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

p.166 : 법 제56조 제3항 수정 및 단서 신설

제3항 덤핑방지조치의 유효기간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 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덤핑방기관세 또는 약속	덤핑방지조치

p.186 : 법 제59조 제2항 수정

제2항 환급 및 담보해제와 정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p.192 : 법 제62조 제1항 수정

제1항 상계관세 부과와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상계관세의 부과
- ②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

p.192 : 법 제62조 제3항 수정 및 단서 신설

제3항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의 유효기간

상계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 조치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p.225, 226 : 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수정

제1항 용도세율 적용대상

별표 관세율표나 법 제50조 제4항(대통령령으로 조정된 잠정세율),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70조부터 제74조(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까지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사후관리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227 : 법 제84조 수정

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① 별표 관세율표
- ②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 ③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p.233 : 법 제86조 제1항 수정

제1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 ②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 ③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p.234 : 법 제86조 제5항 후단 삭제

제5항 품목분류의 적용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p.235 : 법 제86조 제9항 신설

제9항 사전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의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p.238 : 법 제87조 제2항 수정

제2항 변경내용 고시 또는 공표 및 통지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238 : 법 제87조 제4항 전체 수정

제4항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①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 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1) 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2) 법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p.252 :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수정

제3항 별도면세범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입국장 인도장) 및 법 제196조 제2항(입국장 보세 판매장)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ml)			

개정 전	개정 후
19세 미만인 사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향수 60밀리리터(ml)	향수 100밀리리터(ml)

p.283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신설

- ㉠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 ㉡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p.280 :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수정

법 제95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감면을 [규칙 제46조 제4항]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 ② 법 제95조 제2항 ③에 따른 물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 ㉠ 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개정 전	개정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p.294 : 법 제46조 제1항 수정

제1항 관세환급금의 환급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과오납금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p.306 : 법 제22조 제2항, 제3항 수정

제2항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항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과오납금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p.312 : 법 제108조 제2항, 제3항 수정

제2항 조건 이행의 확인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사후관리의 위탁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p.320 : 법 제110조 제2항의 ② 수정

제2항 납세자권리현장 교부사유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②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323 : 법 제111조 제2항의 ① 수정

제2항 중복조사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①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p.334, 335 : 법 제116조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 수정

법 제 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항 명단 공개 대상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70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관세정보위원회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법 제116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항 소명기회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재심의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제6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341 : 법 제116조의3 제1항 ③ 수정 [2023. 3. 4. 개정]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p.347 : 시행규칙 제61조 ①, ④, ⑤ 수정 / ⑥ 신설 [2023. 4. 11. 개정]

규칙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①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 ② 서울세관장·안양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속초세관장·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 ③ 부산세관장·김해공항세관장·용당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마산세관장·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 ④ 인천세관장·평택세관장·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 ⑤ 대구세관장·울산세관장·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 ⑥ 광주세관장·광양세관장·목포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p.348 : 법 제118조의2 제2항 관련 시행령 박스 [2023. 4. 11. 개정]

법 제118조의2 제2항 관련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 [영 제144조의2 제1항]

법 제118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p.377 : 법 제131조 수정

법 제131조 심판청구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 ② 제121조제3항·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p.430 : 법 제161조 제1항, 제4항 수정

제1항 견본품 반출 허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항 세관공무원의 견본품 채취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p.432 : 법 제164조 제5항 수정

제5항 생략절차 기록 및 관리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434 : 법 제165조 제1항 수정

제1항 보세사 자격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p.435 : 법 제165조 제4항 수정

제4항 등록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 제175조 제1호(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

p.454 : 법 제175조 ⑦ 수정

- ⑦ 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죄행위죄 등) 또는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법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p.515 : 법 제206조 제1항 ㉔의 ㉔ 신설

㉔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p.533 : 법 제216조 제3항 신설

제3항 운송수단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p.534: 법 제220조의2 신설

법 제220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법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p.595: 법 제246조의2 제1항, 제2항 수정

제1항 손실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 보상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598: 법 제247조 제3항 삭제

제3항 검사수수료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①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 ②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p.635: 법 제264조의11 신설

법 제264조의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1항 마약류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제2항 협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준용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준용한다.

p.640: 법 제266조의2 신설

법 제266조의2 **위치정보의 수집**

제1항 마약류 위치정보 수집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항 준용 법률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p.658: 법 제276조 제3항 ②, ③ 수정

- ② 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항(법 제277조(과태료)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재수출감면) 제2항,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항(제277조(과태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국제항 등에서의 출입)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출항절차) 제2항, 제148조(관세통로) 제1항,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③ 법 제83조 제2항(용도세율 사후관리), 제88조 제2항(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물품 양수제한), 제97조 제2항(재수출면세 사후관리) 및 제102조 제1항(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과태료) 제6항 제3호(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658: 법 제276조 제4항 ① 삭제, ③ 수정, ④ 삭제, ⑥ 삭제, ⑧ 삭제

제4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② 또는 ③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② 법 제135조(입항절차)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출항절차)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 ③ 법 제135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항·제4항·제6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항외 하역) 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또는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 또는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을 위반한 자
- ④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3항,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1항 또는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 ⑥ 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 ⑦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⑧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사 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p.658: 법 제277조 제3항 신설

제3항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② 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3항,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1항 또는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 ④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 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p.669 : 법 제284조의2 제1항 관련 시행령 박스 [2023. 4. 11. 개정]

법 제284조의2 제1항 관련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 [영 제266조의2 제1항]

법 제28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p.714, 715: 법 제327조의3 제3항 수정, 제7항 수정, 제8항·제9항 신설

제3항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5조 제2호(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또는 제3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 ⑤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법 제327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7항 보고 및 제출 명령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 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8항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항 세부사항 규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p.718 : 영 제285조의7 제2항 단서 삭제

[2023. 12. 12. 개정]

제2항 납부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P.459 : 영 제285조의7 준용규정 박스 동일하게 수정